

겸직허가및신고규정

제정 2015. 6. 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에 의하여 회원의 겸직허가, 그 취소 및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겸직허가)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할 때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 또는 법인의 사용인이 되고자 할 때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사외이사 포함), 감사가 되고자 할 때

제3조(겸직허가 제외)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겸직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단 이 회의 신고하여야 한다.

1.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 또는 법인의 사용인이 되고자 할 때
2.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감사가 되고자 할 때

② 제1항의 겸직신고서에 첨부할 서류에 관하여는 지침으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겸직은 허가 및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 변리사업, 세무사업, 관세사업, 공인노무사업, 공인중개사업 등 변호사 직역 관련 업무를 영위하고자 할 때
2. 법률에 의해 법원에서 선임하는 각종 재산관리인 등에 취임하고자 할 때
3.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이 되고자 할 때

제4조(겸직허가의 신청)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에 의한 겸직허가를 신청하는 회원은 겸직허가 및심고지침에서 정한 서면을 첨부하여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수수료) ① 제4조의 허가를 신청하는 회원은 각 1건에 대하여 심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제2조 제2호의 사용인(이하 “사내변호사”라 한다) 등으로 취업하기 위하여 겸직허가를 신청한 회원에 대하여는 위 심사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심사수수료는 지침으로 정하며, 납부된 심사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취임 취소, 부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겸직허가신청을 철회할 경우 상임이사회 결의로 심사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6조(형식적 요건의 심사) ① 회장은 회원의 겸직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등 형식적 요건 및 심사수수료 납부 여부를 심사하고, 미비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보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또는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을 각하한다.

③ 제1항의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허가신청에 대하여 회장은 신속히 겸직허가여부에 관한 심사를 개시한다.

제7조(처리기간) 회장은 회원의 겸직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의 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보정이 있는 때로부터 처리기간이 진행되는 것으로 한다.

제8조(겸직허가의 기준) 회장은 회원의 겸직허가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이 취급하는 업무가 변호사의 기본적 사명 및 직무 독립성과 자율성에 반하지 않고, 변호사로서의 신용 및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9조(허가의 조건) 겸직허가에는 조건 또는 기간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허가의 실효) 겸직허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 실효된다.

1. 회원이 변호사법 제1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한 때
2. 회원이 제14조에 의한 영업폐지를 신고한 때

제11조(목적변경에 따른 허가) ① 허가받은 겸직에 대하여 사업목적 또는 업무의 성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회원은 지체 없이 목적변경에 따른 겸직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신청 및 그 허가의 실효에 관하여는 제4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겸직허가의 기간 및 갱신) ① 겸직허가의 유효기간은 6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회원이 겸직허가를 받은 업무 등을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하려고 하는 경우 기간만료 2개월 이전에 기간만료에 따른 겸직허가 갱신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까지의 사이에 겸직허가 갱신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허가신청 및 그 허가의 실효에 관하여는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보고조사) ① 회원은 허가를 받은 영업 등에 관하여 회장으로 부터 보고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겸직허가를 받은 회원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그 겸직허가가 제8조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은 제3조 제1항에 의한 겸직신고에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는 ‘신고’로, ‘허가를 받은’은 ‘신고를 한’으로 본다.

제14조(업무폐지 등 신고) ① 회원은 겸직허가를 받은 후 그 신청서 기재사항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어 제8조를 충족하지 않을 염려가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회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허가에 관련된 영업을 폐지하거나 또는 그 직을 사임 혹은 퇴임한 경우는 신속히 회장에게 서면으로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이유명시) 회장은 겸직허가신청, 사업목적변경 등에 의한 겸직허가신청 또는 겸직허가 갱신신청을 거부하는 경우(각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거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허가의 취소사유) ① 회장은 겸직허가를 받은 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겸직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겸직허가신청시(사업목적변경 등에 의한 허가신청 및 갱신신청의 경우를 포함한다) 허위 신고를 한 때
2. 겸직허가(사업목적변경 등에 의한 허가신청 및 갱신신청의 경우를 포함 한다)에 첨부된 조건 또는 기간 등의 부관에 위반한 때
3. 제13조의 보고요청 또는 조사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때
4. 허가를 받은 업무가 제8조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때
5. 업무방식, 사건 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송무업무를 주목적으로 겸직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때

② 제1항 제5호의 구체적인 기준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17조(상임이사회) 회장은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회의 의견을 들어 검직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8조(청문) ① 회장은 검직허가신청을 불허 또는 제16조에 의해 검직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검직허가 신청이 불허되거나 제16조에 의해 허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회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제2항의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청문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9조(대리인) ① 해당 회원은 청문에 대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20조(청문실시자 지정) 회장은 상임이사회에 청문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청문결과 통지) 회장은 제18조에 의한 청문이 종료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해당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2조(징계의 요청) ① 회장은 회원이 제11조 내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 또는 해태한 경우 또는 제16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또는 이 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회장은 검직신고를 한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검직신고 시 허위신고를 한 때
2. 제13조의 보고요청 또는 조사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때
3. 신고를 한 업무가 변호사의 기본적 사명 및 직무 독립성과 자율성에 반하고, 변호사로서의 신용 및 품위를 손상하는 때
4. 업무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송무업무를 주목적으로 검직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때

③ 제2항 제4호의 구체적인 기준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23조(위임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15. 06.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6. 23.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이 규정 시행이전에 겸직허가를 받은 회원은 이 규정에 의한 겸직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일 현재 겸직허가를 받은 지 3년이 경과된 회원은 제12조에 의한 겸직허가 갱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회원은 겸직허가일로부터 3년이 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제12조에 의한 겸직허가 갱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